

■ 치과 칼럼

'코로나19' 감염 우려, 치과 치료 관촬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치과에 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치과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는 말이다.

잘라 말하면 코로나 피하려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치아우식증(이하 충치)이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활동량은 줄고 음식 섭취량은 늘어난 요즘, 충치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충치는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크(plaque)가 주요 원인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고,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안에 남은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acid)이 법랑질을 손상시켜 충치를 유발하게 된다.

또 충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으니까 당장은 관촬겠지." 라는 생각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하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가급적 치료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는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이때 충치가 치아 표면(법랑질)에만 발생했다면 레진이나 실란트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 부위부터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충치 부위를 삭제한 뒤 인레이(골드, 레진)나 아말감으로 삭제된 부위를 채워 넣어야 한다. 반면 우식증이 치수까지 진행돼 치수염 증세가 보인다면 신경 치료를 시행한 뒤 크라운(골드, 포세린)으로 씌워줘야 한다.

감염 우려로 치과 치료가 꺼려지는 경우 진행 정도가 경미하다면 치료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건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극심한 통증과 시린이 증상이 동반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충치가 이미 많이 진행됐을 확률이 높으니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치과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붓비지 않는 시간은 언제든지,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지, 치료 기간과 시간을 단축할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당분이 함유된 시럽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당분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또 식사할 때 음식을 오랫동안 물고 있는 습관 역시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사 시간 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후에는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처럼 충치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나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 치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치아 중앙의 홈이 깊어 어금니 부위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평소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Micheal Han D.D.S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TEL (714) 773-9999
goteamhncd@gmail.com



■ 법률 칼럼

코로나, 행정명령 시대의 이민

1. 코로나 사태와 관련 이민 조건

1) 현재 이민국 상황은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 중단이지 업무 중단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이 잠정적으로 대면 접촉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민국의 대면 접촉 서비스는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채취 서비스, 인포패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서류 접수, 심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영주권 심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등은 모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3월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7개의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고, 기타 학생신분, E-2, 종교비자로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등의 케이스들이 계속 승인이 되었습니다. 접수증 및 승인서 등이 문제 없이 계속 송부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민국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승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 Pre-valuing Wage Determination(적정임금 결정)과 펄 시스템을 통한 Labor Certification 등도 계속 처리가 되어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급행 서비스 잠정 중단에 대한 대처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E-2/R-1/L-1 청원서(I-129) 등의 급행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위의 케이스(신분 변경/연장)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류 신분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분 변경/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을 꼭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2. 이민 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조건

1)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60일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은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각종 가족 초청(배우자, 자녀 초청), 취업영주권 신청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도 가족 초

청 영주권 등이 계속 승인이 되어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2) 비이민 신분 변경/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종교비자 신분 변경/연장, E-2신분 변경/연장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등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학생 신분 변경, 종교비자 연장, E-2 연장 등이 이번 4월 5월에도 모두 무사히 승인이 되었습니다.

3)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명령 서명 이후 4월29일에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였고 5월7일 경에 무사히 영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 종합 조언

코로나 사태와 행정명령 때문에 움츠러 드시지 말고 영주권 신청/신분 변경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반 여건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승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1월17일에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 4월 마지막 주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 3달 3주 만에 영주권 승인이 난 사례가 있었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승인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DACA갱신의 경우도 모두 2달 미만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조건부 해제, 그리고 노동허가증 신청, DACA 연장 시에 지문 채취를 생략하고 과거의 지문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승인해 주고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313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